# 남북관계 발전 기반 조성

M

제1절 제도적 기반 조성

제2절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기능 활성화

제3절 남북협력기금의 관리 · 운용

제4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남북관계 진전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같은 국내적 기반 구축과 더불어 남북간 경협분야를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였다. MINISTRY OF UNIFICATION

# M

# 남북관계 발전 기반 조성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6년 남북간 왕래인원이 10만명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2005년 남북교역액이처음으로 10억달러 시대에 진입한데 이어 2006년에는 13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제도 등의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하였다.

우선 정부는 남북관계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여야 합의하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 발전법')을 제정하고 2006년에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8차례의 개정을 통해 진전되는 남북관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북협력기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내적 기반 구축과 더불어, 남북간에도 경협분 야를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였다. 2000년 4개 합의서를 시작으로 2006년 현재 총 13개 경협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보다 제도화된 여건하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10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개성에 설치되어 남북경협을 위한 다양한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남북경협을 위한 높은 벽을 한 단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물적, 제도적 기반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 제1절 제도적 기반 조성

###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ㆍ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 대화가 증가하고 각 분야의 교류ㆍ협력도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뒷받침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대북정책 결정 및 추 진과정에 있어서 국회ㆍ정당의 협력과 국민 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05년 12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남북관 게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정부는 2006년 6월 남북관계 발전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동법 시행령 ('06.6.30)과 시행규칙('06.11.17)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제4조)과 남북 평화공존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체계를 완비하였다.

#### 남북관계 발전법 시행령 주요 구성 : 총4장 23조

- o 제1장 총칙
- △제정목적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원칙 △남북관계 성격
- o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 △정부의 책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
- \* 발전위원회 구성: 위원장, 정부위원 11인, 민간위원 9인(국회추천 7인, 위원장추천 2인) 등
- o 제3장 남북회담대표 임명 등
- △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 임명 및 권한 △공무원의 북한 파견 등
- o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절차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및 효력정지
- o 부칙
- △법률 시행전 국회동의를 거친 남북합의서에 대한 경과조치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발전을 추진하는 기본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의 통일원칙,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추진,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남북관계 이용 금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북정책이 국민 적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간의 관계를 '통일을 지항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 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되 현실적으로 내국관계나 국가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였다. 아울러 남북간 거래는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 임을 명시하여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합의된 정신을 국내법으로도 재확인하였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 무로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 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 결, 대북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5년 단위 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통일부장관이 국민의 다각적 의견수렴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에 관련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1명 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 다. 아울러 확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고시하 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대국민 투명 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지던 남북회담 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임명절차와 대표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절차에 따 른 권한 행사와 대북정책의 합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포함된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의동의 등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절차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 발효절차를 마련하고 동절차를 거친 남북합의서가 조약에 준하는 법률적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발전법의 발효와 함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체계를 완비함으로써 대북정책의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또한 남북간 회담·교류 등 모든 대북정책을 법령 안에서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남북의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더 앞당길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 남북관계 발전법 시행령 주요 구성 : 총4장 23조

#### o 제1장 총칙

- △ 제정목적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요청 △기본계획 등 고시 △ 유관부처간 협조 △ 시행계획 점검 등
- o 제2장 위원회 등
- △ 발전위원회 운영 및 심의사항 △ 실무위원회 구성
- o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 $\triangle$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triangle$ 남북회담운영을 위한 협의  $\triangle$  공무원의 북한 파견 등
- o 제4장 남북합의서 공포 등
- △ 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 합의서의 공포 및 관리 △ 합의서의 효력정지

### 2.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내법령 정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래, 남북 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8차례에 걸쳐 관련법령을 개정하였고, 법령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고시・훈령 등 하위 법령도 갖추어 왔다.

2005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2005.5.31) 작업도 6.15 남북정상회 담 이후 남북교류협력 변화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물품의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포괄승인제를 도입하였고,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북한 주민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간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련 하위법령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금강산관광객등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를 개정 (2005.1.31)하여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증서류를 면제하고,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를 개정(2005.3.23)하여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및 개성공단 반출입 물품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한편, 남북이 합의하여 개성공단 내 설치한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의 운영을 위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운영규정」을 새로이 제정(2005.11.20)하였다.

2006년에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개정(2006.1.20)하여 손실보조의 기업별 약정한도를 높이고, 기금지원의 공정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해 사업심 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성공업지구방문 및 협력사업승인 절차에 대한특례」를 개정(2006.5.12)하여 북한방문증명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였다.

북한도 우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북남경제협력법」을 채택(2005.7.6)하여 남북경제협력의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 남북간 제도화 진전 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남북교 류협력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 3. 남북경협합의서 발효 및 제도화 추진

남북경제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합의수준을 넘어 법적 · 제도 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남북간 합의서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 에 남북간 경협분야 합의서들을 채택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하는 노력을 지속 해왔다.

그 결과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 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 4개 경협합의서를 체결(2000.12.16)한 데 이어, 2004년까지 추가로 「남북해운합의서」 등 9개 경협합의서를 타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남북은 각기 내부절차를 거친 후 발효문본을 교환함으로써 13개 경협합의서를 정식 발효시켰다. 한편 정부는 남북간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하고 대북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에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5.12.29)하였다. 동법에서는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미 체결된 13개 경협합의서는 물론 향후 체결될 남북간 경협합의서는 국내법적 효력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

경협분야 합의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진행중인 경협사업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공동위원회」,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등 남북공동기 구를 두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법적 권능을 갖는 상설기구라는 점에서 그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은 2006년 6월에 개최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일정에 합의하고, 2006년 7월 4일 쌍방 위원명단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하였으나, 이후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으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후속 합의서 체결, 공동위원회 가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13개 경협합의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2003.6.30 국회동의	2003.8.20 발효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합의서	2002.12.6 체결	2004.9.23 국회동의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2004.9.23 국회동의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2002,12,8 체결		2004,3,20 4464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2004.12.9 국회동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10.12 체결	2004.9.23 국회동의	2005.8.1 발효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2004.1.29 체결	2004.9.23 국회동의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004.4.13 체결			
남북해운합의서	2004.5.28 체결	2004.12.9 국회동의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2001,0,20 M E			

### 제2절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기능 활성화

남북간 경제거래를 직접거래 방식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2005년 10월 28일 개성공단 내에 개소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이하 경협사무소)는 남북 사무소간 상시적 협의를 통해 경협여건을 개선하면서 민간기업의 사업협의를 지원하고 있다.

### 1. 남북기업간 사업추진 지원

경협사무소 개소로 남북기업 간 사업협의가 개성에서 진행 되어, 우리 기업들이 제3국에서 북측과의 사업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던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 었다.



특히, 2005년까지 중국 단동에

서 매년 5월 및 11월경에 개최되던 의류 위탁가공 상담회를 2006년 부터 경협 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남북이 합의함에 따라 의류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간 사 업협의가 경협사무소로 전환되고 있다.

경협사무소 개소 이후 남한측 기업인 1,556명, 북한 민경련 및 기업소 관계자 1,262명이 개성을 방문하여 총 489회의 남북기업간 사업협의가 개최되었다.

경협사무소는 나아가 북한측 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대북 경협사업 제안, 작업진도 파악, 물품선적 확인 등 다양한 중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북한 현지 공장방문이 어려운 남한측 기업들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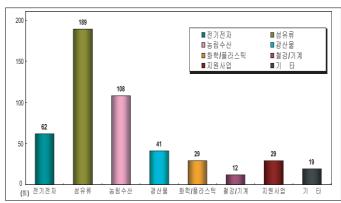
남북기업간 사업협의 현황

71	간	협의건수	방 문 인 원				
71	긴	합의신구	남 측	북 측	합 계		
	11월	17	33	27	60		
2005년	12월	26	127	84	211		
	소계	43	160	111	271		
	1월	11	48	32	80		
	2월	26	67	63	130		
	3월	23	106	61	167		
	4월	66	145	71	216		
	5월	41	137	109	246		
	6월	61	173	156	329		
2006년	7월	39	156	126	282		
	8월	34	115	116	231		
	9월	26	80	83	163		
	10월	19	72	54	126		
	11월	39	98	114	212		
	12월	61	199	166	365		
	소계	446	1,396	1,151	2,547		
합 계		489	1,556	1,262	2,818		

### 사업형태별 사업협의 건수

# 일반교역, 78 29 협력사업, 147 위탁가공교역, 235

### 사업분야별 사업협의 건수



UNIFICATION WHITE PAPER 2007

남북경협과 관련한 각종 문건(원산지증명서, 사업계약서 등)에 대한 진위여 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경협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도 제고되고 있다.

### 2. 대북사업 추진여건 개선

2006년 5월 4일 남북측 사무소간 「견본송달 지원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종래 중국을 경유하여 전달되던 견본이 개성을 통해 송달 가능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57개의 우리 측 기업들이 총 223건의 견본을 송달함으로써 견본송달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남북간 견본 송달지원 체계

남측 기업 ↔ 남측구간 운송 (현대택배) ↔ 물품 전달 (남·북 사무소) ↔ 북측구간 운송 공장

남북기업의 실무자들이 견본 또는 시제품(試製品)을 보면서 경협사무소에서 기술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남북경협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종래 기술적 복잡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전기전자분야로 경협분야를 다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협의는 2006년 1월 「㈜폴리통상→모란봉피복공장」간 첫 기술협의 후 2006년 12월 31일 현재 총 50회 개최되었다.

아울러, 북한방문을 위한 초청장을 발급받는 데 종래 1개월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2006년 5월 이후 일정기간 동안 수시방북이 가능한 복수초청 장이 발급(전체 초청장 대비 26.3%)되었다.

### 3. 경협 촉진사업 추진

경협사무소에서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개소 초기에는 남북측 경협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경협사무소로 초청하여 총 4회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경협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데 주력하였다. 4월 이후에는 이러한 간담회를 한 단계 발전시켜 의류, 농산물, IT등 분야별 교역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새로운 사업추진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소내 상품전시실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상품전시실에는 남북간 위탁가공 교역제품, 개성공단 생산제품, 북한 생산제품 등 총 5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향후 경협시무소에서는 상품전시회 교차 개최, 경제시찰단 상호파견, 북한 무역실무인력 연수 등 다양한 경협 활성화 촉진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협기업 초청 간담회



경협사무소내 상품전시실

# 제3절 남북협력기금의 관리 · 운용

### 1.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남북교 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1년 3월 20일 최초 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설치 · 운용되고 있다.

###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2006.12.31 기준, 단위: 백만원)

연 도	정부출연	민간출연	공자기금예수금	운용수익 등	계
1991	25,000	-	-	237	25,237
1992	40,000	0	-	5,118	45,118
1993	40,000	3	-	4,778	44,781
1994	40,000	1	_	9,387	49,388
1995	240,000	119	-	14,589	254,708
1996	100,000	132	-	18,409	118,541
1997	50,000	288	-	27,874	78,161
1998	-	-	-	40,280	40,280
1999	-	3	149,831	23,013	172,847
2000	100,000	542	254,852	30,393	385,786
2001	500,000	1,080	310,000	29,406	840,486
2002	490,000	78	505,000	42,036	1,037,114
2003	300,000	1	823,000	46,515	1,169,516
2004	171,400	1	310,000	38,371	519,772
2005	500,000	33	460,000	31,178	991,211
2006	650,000	15	940,000	36,619	1,626,634
계	3,246,400	2,294	3,752,683	398,203	7,399,580

<sup>\*</sup> 공자기금예수금은 경수로 사업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조달한 금액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일부 자발적인 민간의 출연도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2006년 12월말까지 정부출연금 3조 2,464억원, 민간출연금 23억원, 운용수익금 3,771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조 7,527억원, 기타 수입금 211억원 등총 7조 3,996억원이 조성되었다.

한편, 북핵실험 등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여 2007년도 정부출연금 규모는 5,000억원으로 2006년도 6,500억원에 비해 1,500억원이 감소하였다.

### 2.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1999년까지는 비료·쌀 지원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건설사업 등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의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항목의 자금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교류가 성사됨에 따라 기금지원 분야도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크게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무상지원과 민 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유·무상 지원으로 대별하여 집행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무상지원 사업은 2006년 12월말까지 총 571억원이 집행되었다. 2006년도에는 인적왕래 지원 53억원, 사회문화협력 지원 74억원 등 총 127억원이 집행되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적왕래 분야에 금강산 체험학습경비 지원 47억원,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참관경비 지원 1억원 등 12건의 지원이 있었고, 사회문화교류 분야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지원 30억원, 6·15 민족통일대축전행사 지원 13억원, 평양과기대 건립 지원 10억원 등 20건의 지원이 있었다.

남북교류협력 유상지원 사업은 2006년 12월말까지 총 2,160억원이 집행되었다.

2006년도에는 교역경협 자금으로 479억원(교역자금 대출 27건 73억원, 경협자금 대출 23건 406억원)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5년 293억원(교역자금 대출 82억원, 경협자금 대출 211억원) 대비 63% 증가한 규모이다.

민족공동체회복 무상지원 사업은 2006년 12월말까지 총 1조 9,436억원이 집행되었다. 2006년도 이산가족지원사업은 99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3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25억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지원 68억원 등이다.

2006년도 인도적 지원사업은 60건 2,125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비료 35만톤 지원 1,200억원, 대북 수해복구 지원 552억원, 개성공업지구지 원협회의 대북연료 지원 52억원 등이다.

2006년도 경제분야 협력기반 조성사업은 총 23건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 내역은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사업 636억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사업 지원 448억원,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지원 277억원 등이다.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유상지원 사업은 2006년 12월말까지 총 2조 2,467억원이 집행되었다. 2006년도에는 대북 역사(驛舍)건축 기자재 차관대출 153억원, 개성공단 관리기관 소요경비 대출 78억원 등 총 5건 359억원이 집행되었다.

한편, 정부는 2001년부터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집행 이전에 기금의 사용내역 등을 국회에 사전보고 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부터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간평가단과 자체검증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기금지원 결정 및 집행·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지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2006.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 )는 기금사업 건수

										、 一 八 百 八 百 位 十	
	구분	자금종류	91~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Ç	인적왕래지원		277	253	23,686	1,142	1,056	3,786	5,289	35,487
				(1)	(1)	(9)	(3)	(7)	(13)	(12)	(43)
	남북 교류	사회문화협력	980	637	102		654	3,098	7,468	7,375	20,314
		지원	(3)	(1)	(1)		(2)	(10)	(18)	(20)	(50)
	협 력	교역경협손실	1,268								1,268
	지 원	보조	(1)								(1)
		소계	2,248	914	354	23,686	1,796	4,154	11,253	12,664	57,070
경		<i>1</i> /1	(4)	(2)	(2)	(9)	(5)	(17)	(31)	(32)	(94)
성 상		이산가족교류 지원	986	2,830	1,299	2,029	2,996	3,158	13,289	9,908	36,494
경 사	민 족 공동체 회 복 지 원		(3)	(5)	(5)	(6)	(6)	(5)	(7)	(6)	(28)
업		인도적 지원 사업	260,827	97,737	97,615	122,585	150,134	122,547	186,621	212,536	1,250,600
			(13)	(9)	(25)	(30)	(36)	(46)	(52)	(60)	(202)
			4,882	15,994	89,850	36,789	76,318	76,096	204,475	152,091	656,493
		조성사업	(1)	(3)	(1)	(5)	(6)	(10)	(18)	(23)	(36)
		- 경제분야협력	4,882	14,578	89,850	36,789	76,318	76,033	204,475	152,091	655,015
		기반조성	(1)	(1)	(1)	(5)	(6)	(9)	(18)	(23)	(33)
		– 사회문화분야		1,416				62			1,478
		협력기반조성		(2)				(1)			(3)
	人 ·	소 계	266,695	116,560	188,763	161,402	229,447	201,801	404,385	374,534	1,943,588
		T /11	(17)	(17)	(31)	(41)	(48)	(61)	(77)	(89)	(266)
	경상사업지원 합계		268,943	117,474	189,118	185,088	231,243	205,954	415,639	387,199	2,000,657
			(21)	(19)	(33)	(50)	(53)	(78)	(108)	(121)	(360)

216,037
220,001
(209)
39,158
(172)
176,879
(37)
216,037
(209)
872,338
(11)
1,374,393
(1)
2,246,731
(12)
2,462,768
(221)
4,463,425
(581)

2003년 2월에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및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등 기금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소액 대출(30억원 미만 교역자금대출, 50억원 미만 경협자금 대출)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의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를 생략하는 등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포괄(실적한도)대출방식의 도입, 금리인하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였다.

2004년 1월에는「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및「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등 기금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소요자금의 70~80%에서 80~90%로 대출규모를 확대 하였고, 신용대출 대상 기업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신용대출 비율을 종전보다 10% 인상하고, 신용보증서 제출시 미보증금액에 대해 신용대출, 북한 소재 자산을 첨담보로 인정, 신용대출 실시 등 대출조건을 완화하였다.

2005년 1월에는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북투자 기업들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맞추어 기존의 경협자금 대출을 투자자금 대출, 산업용지분양자금 대출, 운전자금 대출, 사회간접자본 시설자금 대출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한정된 기금재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타 금융기관과의 협조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남북간 교역의 안정성 제고와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2004년 5월부터 교역분야 손실보조제도를, 2004년 9월에는 경협분야 손실보조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 9월부터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자금을 대출승인 하면서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정규담보로 인정하는 등 대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개성공단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06년 1월에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손실보조 약정한도를 상향조정(경협손실보조는 20억원에서 50억원, 교역손실보조는 5억원에서 10억 원) 하고 경협손실보조 신청요건 등을 완화(3년이상 업력—1년이상 업력)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하고 기금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제4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간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 · 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정부내 부처간 협의기구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다.

동 협의회는 위원장인 통일부 장관을 포함하여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전문가 위원 위촉은 통일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2005년 5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3인 이상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말 현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개 부처 14명의 정부위원과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9년 이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총 178회 개최하여 모두 351개의 안 건을 심의 · 의결하였고, 2006년에만 총 15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모두 49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중 「남북간 육로통행체계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등 교류협력 부문이 25건, 「대북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등 인도적 지원부문 8건,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등 개성공단 건설 관련 부문이 4건,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등 이산가족 교류 부문 3건, 기타 「남북협력기금 운영관리규정 개정」등이 9건을 차지하였다.

### 2006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현황

회 차	의결 일자	안 건				
차		의안번호	의 안			
164	'06.1.9	300	남북협력기금운영관리규정 개정			
165	'06.1.26	301 302 303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의 평양과기대 건립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백두산지구 관광인프라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66	'06.2.8	304	WHO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67	'06.2.17	305 306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13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협력기금 지원			
168	'06,2,27	307 308 309 310 311	2005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개성공단 전력 · 공급 관련 한국전력IT 협력기금 대출 승인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사업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			
169	'06.3.27	312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본청사 및 숙소 신축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70	'06.4.10	313 314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금강산 관광지역 소방설비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71	'06.4.27	315 316 317 318 319 320 321	남북간 육로통행체계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북측 통신연락소 수요 통신자재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006년 대북지원 민간단체 개별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개정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72	06,5,26	322 323 324 325 326	2007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UNESCAP의 제2차 대북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14차 6.15계기 특별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협력기금 지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남북협력기금 대출변경 동해선 남북도로연결 총사업비 변경 및 소요자금 지원
173	'06.6.13	327 328 329 330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일부개정 UNICEF를 통한 북한 영유아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공동행사 관련 남한방문 북한주민 접촉절차에 관한 특례 제정 2006 『6.15민족통일대축전』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74	'06.7.10	331 332	통합상황실(경의선) 설치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일부 개정
175	'06,8,25	333 334 335 336 337 338	동해선 출입시설 공용야드 건립 소요자금 지원 및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금강산·개성지역 기상관측장비 설치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006년도 포항공대의 『북한 경제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006년 대북지원 민간단체 합동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006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대북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76	'06.9.28	339 340 341 342	' 06년도 삼일포협동농장 공동영농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북한 IT인력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임진강수해방지사업 용역재착수 등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지원 (주)신원, (주)태성산업에 대한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약정체결 승인
177	'06.10.29	344 345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경의선 열차시험운행 행사비 정산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78	'06.12.22	346 347 348 349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및 집행계획 변경 대북 자재·장비 차관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추가분 지원 증액